

박형준 / 2월 / 기초 GS+ / 9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득성 평점	응시인원
535187	20.5	14	0	0	34.5	1	0.64%	7	156
535669	19.5	14	0	0	33.5	2	1.28%	6	
535219	19.5	13.5	0	0	33	3	1.92%	6	
535498	20	13	0	0	33	3	1.92%	6	
535080	19	13.5	0	0	32.5	5	3.21%	5	
535140	19	13.5	0	0	32.5	5	3.21%	5	
535347	18.5	14	0	0	32.5	5	3.21%	5	
535473	19.5	13	0	0	32.5	5	3.21%	6	
535521	19.5	13	0	0	32.5	5	3.21%	6	
535215	19	13	0	0	32	10	6.41%	7	
535262	19	13	0	0	32	10	6.41%	5	
535504	19	13	0	0	32	10	6.41%	5	
535579	19.5	12.5	0	0	32	10	6.41%	7	
535820	19	13	0	0	32	10	6.41%	4	
535211	17.5	14	0	0	31.5	15	9.62%	5	
535257	18.5	13	0	0	31.5	15	9.62%	5	
535597	19	12.5	0	0	31.5	15	9.62%	6	
534532	18	13	0	0	31	18	11.54%	6	
535587	18.5	12.5	0	0	31	18	11.54%	6	
535654	17.5	13.5	0	0	31	18	11.54%	6	
535540	17.5	13	0	0	30.5	21	13.46%	5	
536027	19.5	11	0	0	30.5	21	13.46%	5	
536249	17.5	13	0	0	30.5	21	13.46%	6	
535171	19	11	0	0	30	24	15.38%	4	
535192	17	13	0	0	30	24	15.38%	4	
535356	17.5	12.5	0	0	30	24	15.38%	7	
535529	19.5	10.5	0	0	30	24	15.38%	6	
535805	17.5	12.5	0	0	30	24	15.38%	6	
535991	16.5	13.5	0	0	30	24	15.38%	6	
535155	16.5	13	0	0	29.5	30	19.23%	6	
535179	17.5	12	0	0	29.5	30	19.23%	5	
535258	17.5	12	0	0	29.5	30	19.23%	4	
535316	20	9.5	0	0	29.5	30	19.23%	7	
535994	16.5	13	0	0	29.5	30	19.23%	5	
525497	18	11.5	0	0	29.5	30	19.23%	6	
537170	17.5	12	0	0	29.5	30	19.23%	4	
534515	17.5	11.5	0	0	29	37	23.72%	4	
535335	16.5	12.5	0	0	29	37	23.72%	4	
535412	16	13	0	0	29	37	23.72%	5	
535584	17	12	0	0	29	37	23.72%	4	
535596	19	10	0	0	29	37	23.72%	6	
535217	18.5	10	0	0	28.5	42	26.92%	6	
535461	16.5	12	0	0	28.5	42	26.92%	6	
535525	17.5	11	0	0	28.5	42	26.92%	6	
535548	17	11.5	0	0	28.5	42	26.92%	6	
535594	16.5	12	0	0	28.5	42	26.92%	4	
536161	17.5	11	0	0	28.5	42	26.92%	6	
535256	20	8	0	0	28	48	30.77%	6	
535340	16.5	11.5	0	0	28	48	30.77%	5	
535358	18	10	0	0	28	48	30.77%	5	
535464	17.5	10.5	0	0	28	48	30.77%	5	
535505	16	12	0	0	28	48	30.77%	4	
535617	16.5	11.5	0	0	28	48	30.77%	5	
535882	17	11	0	0	28	48	30.77%	5	
536181	19	9	0	0	28	48	30.77%	5	
536185	17.5	10.5	0	0	28	48	30.77%	6	
537211	18.5	9.5	0	0	28	48	30.77%	6	
535506	18.5	9.5	0	0	28	48	30.77%	6	
535840	18	10	0	0	28	48	30.77%	5	
536005	16.5	11.5	0	0	28	48	30.77%	4	
535539	16.5	11	0	0	27.5	61	39.10%	5	
536010	17.5	10	0	0	27.5	61	39.10%	6	

535244	18	9	0	0	27	63	40.38%	5
535329	16.5	10.5	0	0	27	63	40.38%	5
535331	17	10	0	0	27	63	40.38%	5
535511	18	9	0	0	27	63	40.38%	5
538264	18.5	8.5	0	0	27	63	40.38%	5
536050	16	11	0	0	27	63	40.38%	7
535462	14.5	12	0	0	26.5	69	44.23%	4
535487	18.5	8	0	0	26.5	69	44.23%	4
535659	19	7.5	0	0	26.5	69	44.23%	6
535662	18.5	8	0	0	26.5	69	44.23%	6
535873	17.5	9	0	0	26.5	69	44.23%	6
535514	17	9.5	0	0	26.5	69	44.23%	4
535613	16.5	10	0	0	26.5	69	44.23%	5
536599	15	11.5	0	0	26.5	69	44.23%	5
535874	16.5	9.5	0	0	26	77	49.36%	4
536096	16.5	9.5	0	0	26	77	49.36%	6
535523	17.5	8.5	0	0	26	77	49.36%	4
535368	16.5	9	0	0	25.5	80	51.28%	6
535516	18.5	7	0	0	25.5	80	51.28%	6
535364	18	7.5	0	0	25.5	80	51.28%	6
535223	17.5	7.5	0	0	25	83	53.21%	5
535253	15	10	0	0	25	83	53.21%	4
535319	14.5	10.5	0	0	25	83	53.21%	6
535321	15	10	0	0	25	83	53.21%	6
535735	17	8	0	0	25	83	53.21%	6
537214	16	9	0	0	25	83	53.21%	4
535467	18	7	0	0	25	83	53.21%	6
536470	18	7	0	0	25	83	53.21%	6
536567	17	8	0	0	25	83	53.21%	6
536054	17.5	7.5	0	0	25	83	53.21%	4
534775	18.5	6	0	0	24.5	93	59.62%	5
535255	14.5	10	0	0	24.5	93	59.62%	5
535307	18.5	6	0	0	24.5	93	59.62%	7
535465	15	9.5	0	0	24.5	93	59.62%	4
535670	17	7.5	0	0	24.5	93	59.62%	6
535954	17	7.5	0	0	24.5	93	59.62%	6
536071	17.5	7	0	0	24.5	93	59.62%	5
536144	14	10.5	0	0	24.5	93	59.62%	6
534609	19	5	0	0	24	101	64.74%	6
535183	19	5	0	0	24	101	64.74%	4
535345	18	6	0	0	24	101	64.74%	6
535577	17.5	6.5	0	0	24	101	64.74%	6
535974	17.5	6.5	0	0	24	101	64.74%	4
536592	14	10	0	0	24	101	64.74%	4
535239	18	5.5	0	0	23.5	107	68.59%	6
535310	18.5	5	0	0	23.5	107	68.59%	5
535470	18.5	5	0	0	23.5	107	68.59%	6
535528	17.5	6	0	0	23.5	107	68.59%	4
536093	17.5	6	0	0	23.5	107	68.59%	6
535732	17.5	6	0	0	23.5	107	68.59%	4
535860	15.5	8	0	0	23.5	107	68.59%	6
535327	17.5	5.5	0	0	23	114	73.08%	4
535357	18.5	4.5	0	0	23	114	73.08%	5
535460	12	11	0	0	23	114	73.08%	5
535379	16.5	6	0	0	22.5	117	75.00%	4
536238	14.5	8	0	0	22.5	117	75.00%	5
536372	18.5	4	0	0	22.5	117	75.00%	6
536483	11.5	11	0	0	22.5	117	75.00%	5
534964	20	2	0	0	22	121	77.56%	6
535469	14.5	7.5	0	0	22	121	77.56%	5
535488	17	5	0	0	22	121	77.56%	4
535337	18.5	3	0	0	21.5	124	79.49%	5
535651	15	6.5	0	0	21.5	124	79.49%	6
535819	17.5	4	0	0	21.5	124	79.49%	5
536184	18.5	3	0	0	21.5	124	79.49%	5

535294	16.5	4.5	0	0	21	128	82.05%	5
535647	13.5	7.5	0	0	21	128	82.05%	4
535864	16.5	4.5	0	0	21	128	82.05%	4
538047	12.5	8.5	0	0	21	128	82.05%	4
535133	14.5	6	0	0	20.5	132	84.62%	5
535218	20.5	0	0	0	20.5	132	84.62%	7
535333	15.5	5	0	0	20.5	132	84.62%	5
535661	20	0	0	0	20	135	86.54%	7
535951	17.5	2	0	0	19.5	136	87.18%	6
536141	19	0.5	0	0	19.5	136	87.18%	5
535325	12.5	6.5	0	0	19	138	88.46%	6
535642	18.5	0	0	0	18.5	139	89.10%	4
535857	13	5.5	0	0	18.5	139	89.10%	5
536014	18.5	0	0	0	18.5	139	89.10%	6
536051	18.5	0	0	0	18.5	139	89.10%	5
535161	18	0	0	0	18	143	91.67%	5
535375	18	0	0	0	18	143	91.67%	4
535104	18	0	0	0	18	143	91.67%	5
536688	18	0	0	0	18	143	91.67%	4
534529	18	0	0	0	18	143	91.67%	5
536108	15	2.5	0	0	17.5	148	94.87%	4
536572	17.5	0	0	0	17.5	148	94.87%	6
535348	14.5	2.5	0	0	17	150	96.15%	5
535295	16.5	0	0	0	16.5	151	96.79%	4
535252	15.5	0	0	0	15.5	152	97.44%	4
535453	15	0.5	0	0	15.5	152	97.44%	6
535586	11.5	0	0	0	11.5	154	98.72%	6
535568	5	5.5	0	0	10.5	155	99.36%	4
535742	8.5	0	0	0	8.5	156	100.00%	5

박형준/2월/기초GS+/9회/1번	채점자
	이정은

1. 전반적인 총평

먼저 답안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접침해에 관한 문제로, 판례 타겟팅 및 결론 내기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① -이하여백- 표시는 4문까지 모두 기재하신 뒤에 “전체답안” 의 그 이하가 모두 여백임을 밝히는 것으로, 한 페이지마다 혹은 문제마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1문이 끝난 뒤에는 -끝- 혹은 [끝]만 써주시면 됩니다.

② 간접침해가 쟁점이 될 경우 공용성과 전용성으로 목차를 나누어서 판례 기재 및 사안포섭 가능하다는 부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③ 설문 3에서 공용성 관련 판례를 누락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④ 설문 4는 판례 누락 및 결론 틀리신 경우가 가장 많은 설문이었습니다. 리딩 케이스에 해당하며 결론이 순간적으로 헛갈릴 수 있는 문제이므로 자세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⑤ 설문 3에서 결론을 가정적으로 기재하실 수 있으나, 다른 문제에서는 상황을 보고 최대한 결론은 하나로 내려주시는 것이 가독성에 더 좋습니다.

3. 소결

답안 구성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문 2, 3은 대부분 잘 쓰셨습니다.

설문 4에서 판례 라벨링 및 목차 나누는 것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박형준/2월/기초GS+/9회/2번	채점자
	이정은

1. 전반적인 총평

균등론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중요판례 문제입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① 글씨를 너무 날려 쓰거나, 작게 쓰면 가독성이 좋지 않습니다. “목차”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도 글씨를 크게 쓰시거나, 1. 2. 목차 사이에 한 줄 띄워서 쓰시면 가독성이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② “[문제1] / I. 설문1 / 1. 의의, 취지 등등”의 목차 준위를 맞춰서 써주세요. 통상의 수험생과 답안 스타일을 어느 정도는 맞추시는 것이 가독성에 도움이 됩니다.

③ 설문 1에서 [문언침해여부와 균등론 일반론]에 대한 기재 누락이 많았습니다. 문언침해 여부를 선결적으로 기재해주실 경우 답안지 인상이 더 좋습니다.

④ 균등론에 대한 일반론과 의식적 제외에 대한 일반론을 적절하게 채워주시고, 타겟팅 판례인 [청구범위 감축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주셔야 합니다. 타겟된 판례가 하나로 정해져 있는 설문 1과 같은 문제에서는 시간이 허락된다면 학설과 검토도 써주시면 논점 파악을 정확하게 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⑤ 설문 1에 대한 답을 틀리신 경우에는 판례 내용 숙지 필요하겠습니다.

⑥ 설문 2에서 타겟 판례 기재를 누락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확인해주세요!

3. 소결

이하어백에 관한 문제와 목차 준위, 가독성에 관한 내용은 아직 개선되면 더 좋을 듯한 답안지들이 있어서 채점평에 그대로 기재해두었습니다.

이번 회차 문제는 특허법 전체적으로 빈출 논점 및 중요 논점에 해당하는 바, 관련 내용까지 복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파이팅입니다 !

다른 용어가 새겨넣은 볼, 원통을 지하는 부분 외의
 초를 여전히 특이사항을 취하여 다른 용어가 없는 경우나
 일대일, 기성형식이 적용되는 볼이 = 상등하며,
 (4) 이와 같이 사제리 이차형, 특이사항의 실시 내용
 개성이 높은 '특이사항의 실시'만 <용어는 볼>에
 다른 규정을 임의로 부딪는 것만으로 언제나 인정받을
 수 있는 수 있기 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2) 검토

각종형에 개연성을 확실하게 판단하기 위해, (4) (5)
 가 타당하다.

5. 사안의 경우

(1) 동형성 판단

발명 X의 원형인 구성 C에 개성된 다른 구성 D가
 본질적인 특이사항이나 그 수반의 막대한 차이를 가져
 온다 하더라도 간접형식의 성격에 아무런 위약이
 없으므로 동형성이 인정된다.

(2) 전형성 판단

원형인 C에 다른 구성 D를 부가했다는
 사실만을 타당하게 판단할 수 없이, 전형성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3) 소결

비록 타당성이 있는지는 불분명하여 권징이민족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CIDE는 D의 취조 인해 자신의 관에 행위는 ~~것~~ 그러므로 취조를 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행위는 이문행위의 행위에 드 중립적인 관점에서 간접행위의 성격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취조~~ 방식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6. 결론

따라서, 그의 주장은 부당하다

II. 서론 - (2)

3.5

1. 중립성 관련 - 간접행위 관련

(1) 취조

간접행위 대상물이, ① 특허발명과 동일 또는 ~~동등~~ ^{불변의} ~~취조~~ ^{취조} 대상에 반 대응될 수 있는 경우 불변 이거나, ② 특허발명과 동등 물건의 대상에 반 대응될 수 있는 경우므로, 간접행위 성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 검토

① 간접행위, 이문행위 즉 직접행위에 해당하므로, 직접행위의 가행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

② 다만, 간접행위나 중립성이 위에서는 다른 방식 즉 ~~취조~~ ^{취조}의 양는 등 권징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II. 실용 - (3)

1. 공용성 판단 순서

5.5

(1) 개량형식의 취지

개량형식이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개조) 후 취지는
 발명자 또는 권리소를 가진 출원인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니고
 그 전 단계에 있는 당위를 하여야 할 발명자 또는
 권리소를 가진 출원인 또는 그 상속인이 될 개량형식이 큰 경우
 권리의 특정한 양에 대한 권리 취득의 실행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 아래 이를 특정한 형식으로 개량하여
 특권이 부여되기 위하여 양도 또는 출원인이라 이해된다.

(2) 출원인성상의 의미

위조형식과 동일외 그 취지에 하위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당위'이란 발명자 또는 권리소 일부의 출원인 또는
 상속인이 발명자 또는 권리소 가진 출원인 또는 그 상속인
 이거나 또는 당위를 의미하며, 중립적 당위에 관하여
 양도, 기증, 양도 등의 행위로 포함된다.

2. 관용성 판단

(1) 관용성 판단 방법 순서

① '특정의 출원인^{취지}을 대상으로 한 사용자는 출원인'이 해당
 한에 위계서는 상위형식상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는
 경쟁자, 상용자, 실험자 등 다른 용도가 있어야 하고,
 ② 이와 달리 관용성 특이 출원 이외의 출원인

사용될 이클레, 절명제 또는 일시적인 사용가능성이 없는
간접성대의 생업을 부생할만한 다른 용도가 있다고
알 수 있다.

(2) 특정 구매자의 사용가능한 수직계

이런 물건을 생산, 판매를 하는데, 그 물건의 여러 용도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물건을 구매한 구매자가 그 물건을
사용할 때 특이한 방식의 구매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간접성대에
생략한다 한다.

(3) 영조

이클레 사용가능성이 없는 것은 간접성대의 생업을 부생할
만한 다른 용도가 있다고 알 수 없으므로, 영조 제정한다.

3. 사안의 경우

(1) 승용차 포탄

J이 A+B+C를 제조하여 높은 왜곡도가 이 A+B+C를
이용하여 이를 가함하여 A+B+B+C로만 나타내다
이것이므로 별다른 다른 구매를 가진 물건을 사용하
는 것이므로 승용차를 승용한다.

(2) 원형성 포탄

A+B+C를 제조하여 이를 가함하여 A+B+B+C
로만 나타내다 이 것이 A+B+C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면 A+B+B+C가 크리 양을 가함하여 생
는 수직성을 원형성을 부정할 수 있으므로 있다

할 수 있다면, 제1항으로 주체에 특이성까지 실시제도가
 행정권 갖도록 되어야 함.

2. 간접행위 관련 법리 - (가) (가)

(1) 간접행위의 요건

간접행위 제도는 어디까지나 특이성 확보를 목적으로
 애초에 행위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주체의 불특

특이성의 확보를 위한 불특의 불특이성은 특이성까지
 가리는 구체적인 특이성에 대한 주체는 특이성의 확보를
 국가행위 자체에 그 도미가 아님.

(3) 사안사기의 배제

제1항으로 1조의 '그 목적의 수행에만 상응하는 불특이성'
 배제사안 주체에서의 수행을 의미한다' 불특이라
 함으로

(4) 결과 배제

어디까지 상응성이 주체에 일대일 (주체는 그 결과에
 상응하여 주체에 일대일이고 간접행위도 상응할 수
 있음.

3. 사안의 경우

위 사안에 반제호인 A+B를 주체에서 상응행위
 반제호의 A+B의 사안은 제1항에 상응함으로
 있음으로, 간접행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간접행위를

1828년 5월 12일

장미생리 (문)

205

[출제 2]

I. 실용 (1)

1. ~~특이발명~~의 의미, 특징

특이발명의 구성과 실용발명의 범용성 구성이
구분상 중요 한데에 속하고 있는 말이다.

2. ~~특이발명~~의 요건

(1) 신규성 요건

① 국내에서의 동일성, ② 외국에서의 동일성, ③
특이발명의 동양성을 요한다.

(2) 신규성 요건

① 실용발명이 신규성이 아닐지, ② 범용성
구성의 신규성을 의미한 신규성 요건을 요한다.

3. ~~특이발명~~의 의미, 특징, 근거

① 특허법의 범용성, 실용발명이 특허발명의 본질에
있어 신규성을 의미한 경우 특허발명이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론이다. ② 직접적인 범용의
구성은 중요하며, 신규성을 의미한 법이다.

4. 특허발명의 강제가 있었던 경우

(1) 신규성

① 특허법에서 강제된 출원을 넘어서 출원심의를



(2) 균등성의 여부

구분 a_1 과 a_2 가 균등성의 여부를 보아야 한다.
이때 특히 구분 a_2 에 대한 다수의 의견여부도
중요하다.

(가) 다수의 의견의 여부 (구분 a_2 의)

① 구분 a_2 가 구분 A와 a_1 사이에 있어 소수의견을
A+B, 즉 a_1+B 으로 강독하였다는 다수의견은
 a_2 에 대한 다수의 의견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그러나 명백히 "A는 a_2 에 비해 소수의견 P가
우월하다"라고 기재한 사유는 보다 다수의견의
여부를 인정할 수 있다.

6. 결론

따라서, 2의 결론은 당첨이다.

8.5

고 사안 - (2)

1. 선안을 요미를 구분 보통 요미 다른 사유로
인해 다수의견 결론이 재판 - 결론

(1) 요미

① 선안을 요미를 위에 보통 있는 구분만
재판 결론이 보통, ② 보통 있는 구분
보통의 이유와 관련이 재판 결론은 보통,
③ 보통 이유 결론이 있는 구분은 재판



가동가능한 자료가 있다.

(2) 순서

- ① 선배기술 외에 외에 다른 아무런 본질에 입각한 경우,
- ② 수평선위의 기술 등이 의정서 시점의 입양된 경우, ③ 출원자권을 넘어 취득한 후 정당한 등재 시점에 기술이 있었다면 본질적인 의정서 시점으로 적용된다.

2. 사안의 경우

(1) 불연성여부

두의 수평선 $A+b_1$ 과 2의 수평선 $A+b_2+C$ 는 불연성 다른 부분이 있는 불연성인가 판별한다.

(2) 균등성여부

b_1 과 b_2 이 있는 균등여부가 불제리하게. 의정서 제의여부가 불제리한다.

(3) 의정서 2의 이의 제의 여부

~~이의~~ "b1은 b2에 비해 도가 이가 우측이다" 등 제의서를 제출하였고, 본청이 심사하고 의정서 제출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의정서 제의를 인정할 수 있는 의정서 제의가 인정된다.

3. 결론

2의 수평선 수평선 이니

5.5

14

[문제-1] < I. 서문(2)

1. 간접 침해 제도

누가

(1) 의의 및 취지 (法 112조)

특허권의 무체재산성으로 인해, 침해 행위가 용이하지 않아, 직접 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산업의 행위를 침해로 간주한다.

(2) 요건

1) 물건 배명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적용된다.

2) 방법 배명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적용된다.

3) 전용품

전용성과 공용성을 가진 물건을 의미한다. 공용성이란, 물건의 생산에 사용되는 물건, 전용성이란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2. 이윤 침해의 경우 - 예외

전용품에 개선된 다른 구성요소를 결합하여 특허 배명보다 더 우수한 작용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간접 침해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상유의 해결 - 부가

'C'는 발명 'X'의 전용품이다. 'C'에 'D'를 부가하여 설명 더 위한 작용효과를 예상할 수 있더라도 간접침해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도 없다. 그러므로 127조 침해권 받은 행위에 대하여 Z의 주장은 부당하다.

II. 서문(2)

기.5

1. 균등침해의 경우 - 判例

특허발명과 동일한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뿐만 아니라, 특허발명과 균등한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간접침해가 성립한다.

2. 직접침해가 여부인지 판단

(1) 문제점

직접침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행위를 간접침해 제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때 직접침해가 되어야 간접침해가 성립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1) 긍정설

직접침해가 되어야 간접침해가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2) 부정설

직접침해의 관계없이 간접침해의 손정의 요건을 만족

하는 간접행위가 성립한다는 견해다.

(3) 판례

주 직접적으로 판사한 바 없고, 구체적 사안마다 평가 다르다.

3. **셋문의 해결 - 침해**

특은 C와 균등한 C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제 2개의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III. **셋문 (3)**

5.5

1. **공용성 판단**

(1) 물건 생산의 의미 - 判例

127조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생산'이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일부를 결여하고 사용하여 특허발명이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새롭게 생산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가공·진입행위도 포함된다.

(2) **셋문의 경우**

J이 $A+M+C$ 를 제조하여 제3자에게 공급하였는데, 제3자가 이 $A+M+C$ 를 가공하면 $A+M+B+C$ 로만 나타나 **甲의 발명 X의 구성 $A+B+C$ 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발명 X에 생산에 사용되는 물건은 **명성이 있다.**

2. 전용성 판단

(1) 타용도 여부 판단 - 判例

특히 ~~발명~~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는 경제적 상업적 내지는 실용적인 다른 용도가 없어야 하고, 특히 물건 이외의 물건에 사용될 이론적, 실험적 또는 일시적인 사용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간접침해의 성립을 부정할만한 다른 용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특정 구매자의 사용 - 判例

그 물건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라도, 그 물건을 구매한 제3자가 그 물건을 사용하여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반드시 인비하는 경우에는 간접침해가 성립된다.

(3) 사안의 경우

제3자가 $A+B+C$ 를 이용하며 이를 가공하면 반드시 $A+B+C$ 로 나타나 甲의 발명 X 의 $A+B+C$ 가 인비된다. 전용성이 성립된다.

3. 결론 - 丁 간접침해

~~甲~~ 丁의 생산으로 공급한 $A+B+C$ 는 甲의 발명 X 의 전용성과 공용성 모두 충족되어 甲의 제3자가 이용하며 이를 가공하여 직접침해할 개연성이 크므로 丁의 행위는

가정청탁에 해당하다.

IV. 선행(나)

1. 반제품인 경우 - 判例

특허권의 독자적 원작성, 그 특허가 등록된 국가 내
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국내에서 특허
발명의 실시를 위한 ~~부품~~ 또는 구성 전부가 생산되거나
대부분의 생산 단계를 마치고 ~~마지막~~ ~~단~~ 주요 구성
모듈을 갖춘 반제품이 생산되고, 이를 하나의 주체
에게 수출하고 마지막 단계인 가공·조립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가공·조립이 극히 단순하거나 간단
하여, 위와 같은 생산만으로도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유적
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작용효과를 ~~유지~~ 구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특허발명이
생산된 것과 마찬가지로 본다.

2. 생산의미의 제한 - 判例

121조 1항에서 말하는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
에서 '생산'이란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전단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국내에서
하였다라도 그러한 생산을 국내에서 하였다면 간접청탁
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3. 서문의 해결

(1) 직접침해인지 판단 - 적극

반제품 A+B를 생산하여 수출하는데, 이 제품을 가공
조립하는 것이 특허 사신하거나 간단하여 직접침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간접침해인지 판단 - 적극

반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였다든, 발명X로 만드는
완제품 생성은 외국에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간접침해의
성립은 인정할 수 없다.

(공)

19

가혹상식!

[문제-2]

I. 서문(1)

1. 의식적 제외이론

a) 의의 및 취지

금반언의 범위상, 실시발명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서 제외 의식적으로 제외한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판례를 형성된 법리이다.

(2) 법리

특허권자 또는 출원인이 출원과정에서 실시발명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한 경우에, 심사위원 또는 실시자에게 실시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금반언의 범위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3) 판단기준 - 判例

출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사정 등을 종합하여 출원인이 어떤 구성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수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4) 고려요소 - 判例

명세서뿐만 아니라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 의견서에 드러난 출원인의 의도, 보정사유 등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

2. 감축하는 보정을 한 경우

(1) 문제점

감축하는 보정을 하였을 때, 의식적으로 제외되는 범위가 어떠한지 문제된다.

(2) 핵심

1) 엄격한 기준설

감축 전후를 전후를 비교하여 그 사이에 존재하는 구성요소 모두 제외된다는 견해다.

2) 유연한 기준설

감축 전후를 비교하여 그 사이에 존재하는 구성요소 모두가 제외되지 않고, 사정 등을 참작하여 결정된다는 견해다.

(3) 판례

감축하는 보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감축 전후를 비교하여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요소가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출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출원이 어떤 구성요소를 특허발명의 범주에서 제외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하며, 유연한 기준설 입장이다.

3. 결론 - 비침해

$a+b$ 이든 감축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a_2 가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a_2 를 이용하였을 때,

a1을 사용한 것보다 효과가 떨어지므로, 침해에
책임한다고 볼 수 없다. ~~침해가~~ ~~다~~

8

II. 서문 (2)

1. 선행기술 범위 외의 다른 사정이 의식적 제외되는지 - 判例
선행기술 범위 외에 다른 이유로 보정을 한 경우,
강축하는 보정없이 의견서만을 제출한 경우, 출원 마감을
넘어 등록된 특허를 정정하는 강축이 있는 경우에도 의식적
제외 이론 적용된다.

2. b2가 제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적극
강축과 같은 보정이 있었더라도, b1이 b2보다 효과가
뛰어나다는 의견서 제출을 통해 등록을 받았으므로 b2는
甲의 발명의 보호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 비침해

~~A+b2가~~ ~~비침해~~ b2가 의식적으로 제외되어 A+b2는
甲의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여기에 C까지
부가 결정하였으므로 Z의 행위는 甲 발명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하 여백>

5

13